

※ 번역문은 민원 신청을 위한 참고용이며, 기존의 한글 서식에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こちらの翻訳文は民願申請の参考用であり、提出時には既存の韓国語の書式に韓国語でご記入くださいますようお願いいたしま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6. 9.>

[別紙第1号書式] <改正2023年6月9日>

제 호
第 号

등록번호판재발급등 신청서
登録番号標再発行等申請書

신청인과 자동차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의 정보를 기재 하고, 자동차 소유자가 서명해야 합니다.

申請人と自動車の所有者が異なる場合は自動車の所有者の情報を記載し、自動車の所有者が署名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신 청 인 申 請 人	성 명(명 칭) 氏 名 (名 称)		주 민(사 업 자) 등 록 번 호 住 民 (事 業 者) 登 録 番 号	
	주 소 住 所	(전화번호: (電話番号 :		
자 동 차 自 動 車	등 록 번 호 登 録 番 号			
	차 종 車 種		용 도 用 途	

재발급사항 ☐ 앞번호판 ☐ 뒤번호판 ☐ 앞·뒤번호판 ☐ 재봉인
再発行事項 ☐ 前面プレート ☐ 後面プレート ☐ 前面・後面プレート ☐ 再封印

재발급사유 ☐ 훼손 ☐ 갱신
再発行の事由 ☐ 毀損 ☐ 更新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自動車管理法」第10条第3項及び同法施行規則第5条第4項に基づき、上記の
とおり申請します。

년 월 일
年 月 日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신청인 申請人 </div> <div> (서명 또는 인) (署名又は印) </div> </div>		
구비서류 添付書類	신청인 제출서류 申請人が提出する書類	시·도지사 확인사항 市・道知事の確認事項
	<div> 1. 헐어서 못쓰게 된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 (헐어서 못쓰게 되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 汚損若しくは破損した登録番号標又は封印 (汚損若しくは破損して申請する場合のみ) 2. 자동차등록증 2. 自動車登録証 </div>	<div> 1.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주민등록표초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 個人の場合は住民登録票抄本(住民登録証又は運転免許証の提示で代替可) 但し、申請人が確認することに同意しない場合は、申請人が自ら住民登録票抄本を提出してください。 2.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 다만,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法人の場合は法人登記事項証明書又は事業者登録証 但し、事業者登録証の場合、申請人が確認することに同意しない場合は、申請人が自ら事業者登録証明の写しを提出してください。 </div>
<p>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 중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私は、本件の業務処理に関して、「電子政府法」第36条第1項に基づく行政情報の共同利用を通じて、上記確認事項のうち住民登録票抄本又は事業者登録証明の内容を確認することに同意します。</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신청인 申請人 </div> <div> (서명 또는 인) (署名又は印) </div> </div>		

※ 신청안내

※ 신청案内

신청하는 곳 申請先	시·도 또는 시·군·구청 市・道 又は市・郡・区庁	처리기간 処理期間	즉 시 即時
수수료 手数料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정하는 금액 「自動車管理法施行規則」 第12条に基づき登録番号標の発行代行者が定める金額		

- 자동차소유자는 등록번호판 또는 그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3항).
- 自動車の所有者は登録番号標又はその封印が外されているか、又は認識しづらくなった場合は市・道知事に登録番号標の取り付け及び封印を再申請してください(「自動車管理法」第10条第3項)。
- 위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제3호).
- 上記の事項に違反した場合は、100万ウォン以下の過料に処されます(「自動車管理法」第84条第4項第3号)。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